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9월 1일

나. 발 의 자 : 강승수, 권기만, 김복자, 김재상, 김태근, 박세진
손홍섭, 안주찬, 정하영, 최경동, 한성희, 허 복
(12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7일

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강 승 수 의원

나. 제안이유

-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대상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경로당의 시설기준과 경로당 신축 등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 조건, 지원기준 등을 명시함(안 제3조 ~ 제7조)
- 경로당 신축 등 사업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8조)

- 경로당 신축 등 사업추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6조)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검토부서 : 사회복지과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지역 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개보수 시 지원대상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시 소유 이외의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시설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로당의 경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제4호에 경로당 보수 지원에 관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